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043

발의연월일: 2021. 8. 12.

발 의 자:백혜련·김상희·송재호

오영환 · 용혜인 · 이성만

임호선 · 최기상 · 최종윤

홍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,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.

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현황과 사업 효과성 분석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수행에 대한 규정 이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책 마련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 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의2(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관련사업의 효과,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수 있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5조의3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)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 행할 수 있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·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5조의2(지역사랑상품권 이용
	실태조사) ① 행정안전부장관
	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
	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
	랑상품권 관련 사업의 효과, 지
	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등
	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
	<u>다.</u>
	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
	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
	<u> 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법인</u>
	•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
	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
	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
	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
	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제15조의3(지역사랑상품권 활성
	화 관련 연구사업) ① 행정안
	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
	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
	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	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
	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

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 관·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 행을 위탁할 수 있다.